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112-09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 / 3
- / 4
- / 5
- / 15
- / 17
- / 18
-

2. 금융 6

- / 6
- / 7
- 「 」 / 8
- / 9
- / 19 (ATM)
- / 20

3. 산업(중소기업·특허) 10

- / 10
- / 11
- / 12
- / 13
- / 14

4. 환경·국토 21

- / 21
- 「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 / 28

○		○	‘ ,
/ 29		/ 49	
○		○	
/ 30		/ 50	
○		○	
/ 32		/ 51	
○	/ 33	○	
○	.		/ 52
/ 34		○	. .
○			/ 53
/ 35		○	
○	/ 36	(TPMS)	/ 54
○			/ 55
(http://nhf.mltm.go.kr)	/ 37	○	
○	,	○	/ 56
/ 38		○	
○		/ 57	
/ 39		○	20
○	/ 40	(1)	/ 58
○	/ 41	○	/ 59
○	. PDF	○	
/ 42		/ 60	
○		○	
/ 43		/ 62	
○	/ 44	○	/ 63
○		○	. / 64
/ 45		○	
○		/ 65	
/ 46		○	,
○		/ 66	
/ 47		○	
○	/ 48	/ 67	

○		○	
	/ 68		/ 90
○		○	/ 91
○		○	
	/ 70		/ 92
○		○	
○			/ 93
	/ 72	○	
○			/ 94
	/ 73	○	
○			/ 95
	/ 74	○	
			/ 97
5. 보건복지·여성(법무)	75	○	
○			/ 99
	/ 75	○	
			/ 100
○		○	/ 101
○		○	/ 102
	/ 77		
○ PC	/ 78	6. 고용노동	103
○		○	
	/ 79		/ 103
○			/ 104
	/ 80	○ ()	
○			/ 105
○	/ 81	○	
○	/ 82		/ 106
○	/ 83	○	
○	/ 84		/ 107
○	/ 86	○	
○ 3~5 全			/ 109
	/ 87	○	()
○			/ 110
	/ 88		

○	/ 111	○	/ 133
○		○	/ 134
	/ 112	○	
○	/ 113		/ 135
○ 4		○	/ 136
	/ 114	○ A	/ 137
○	/ 115	○	
○			/ 138
	/ 116	○	
○	/ 117		/ 139
○	/ 118	○	
○	/ 119		/ 140
○		○	
	/ 120		/ 141
		○	
			/ 142
		○	
			/ 143
		○	/ 144
		○ 「	
			/ 145
		○	
			/ 146
		○	/ 147
		○	
			/ 148
		○ ()	
			/ 149
		○	
			/ 150
		○	
			/ 151
		○	
			/ 152

7. 행정안전(소방·경찰) 121

○	/ 121		
○			
	/ 122		
○	/ 123		

8. 보건·국방 124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 ,	○
/ 153	/ 171
○	
/ 154	10. 농식품·산림 172
○ 「 」 3	○
2 / 155	/ 172
○ ,	○ · / 173
/ 156	○ ‘ ,
9. 교육·문화(방송통신) 157	/ 174
○	○
/ 157	/ 175
○ ·	○ / 177
/ 158	○
○ 5 3-4	/ 178
(‘13.3) / 159	○
○ · ·	/ 179
/ 160	○
/ 161	/ 180
○	○
○	(‘13~’16) ,
/ 162	/ 181
○	○
/ 163	/ 182
○	○ / 183
/ 164	○ / 184
○	○
/ 166	/ 185
○ TV / 167	○
○ ·	/ 186
‘107 , / 168	○ / 187
○ 700MHz	○
/ 169	· / 188
○	○
/ 170	/ 189

○ 5 .	○
/ 190	/ 195
○	○ FTA
/ 191	/ 196
○ .	○ . .
/ 192	/ 197
○ .	○ (, ,
/ 193	) / 198
○ / 194	○
	(3 → 2km) / 199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기획재정부 203

○ 교육과학기술부 203

1. / 203
2. · / 203
3. 5 3-4 / 204
4. / 204
5. / 204
6. , / 205

○ 법무부 206

1. / 206
2. / 206
3. / 206
4. / 207

○ 국방부 207

1. / 207
2. / 207
3. / 207
4. / 208
5. / 208
6. / 208
7. / 208
8. / 209
9. / 209
10. / 209
11. / 209

12. / 210

13. A / 210

14. / 210

○ 행정안전부 210

1. / 210
2. / 211

○ 문화체육관광부 211

1. / 211
2. / 211
3. / 211

○ 농림수산식품부 213

1. / 213
2. · / 213
3. / 213
4. / 214
5. / 214
6. / 214
7. / 215
8. / 215
9. / 215

10.	/ 216	4.	/ 221
11.	/ 216	5.	
12.	,		/ 221
	/ 216		
13.	,	○ 환경부	221
	/ 216	1.	
14.			/ 221
	/ 216	2. 「	
15.	/ 217		」 / 221
16.	/ 217	3.	/ 222
17.		4	/ 222
	/ 217	5.	/ 222
18.	5 , ·	6.	/ 222
	/ 217	7.	/ 223
19.		○ 보건복지부	223
	/ 218	1.	
20.	·		/ 223
	/ 218	2.	/ 224
21.	·	3.	
	/ 218		/ 224
22.	/ 218	4. PC	/ 224
23.		5.	
	/ 219		/ 225
24. FTA		6.	/ 225
	/ 219	7.	
○ 지식경제부	219		/ 225
1.		8.	/ 227
	/ 219	9.	
2.			/ 227
	/ 220	10.	/ 227
3.		11.	/ 227
	/ 221		

12.	3~5	全	20.		/ 235
		/ 228	21.		/ 235
13.			22.		/ 235
		/ 228	23.		/ 236
○ 국토해양부	229		24.		/ 236
1.		/ 229	25.	·	·
2.		/ 230	26.		/ 236
3.		/ 230	27.		/ 236
4.		/ 230	28.		/ 237
5.		/ 231	29.		/ 237
6.	·	/ 231	30.		/ 237
7.		/ 231	31.		/ 237
8.		/ 231	32.		/ 238
9.		/ 232	33.		/ 239
10.	,	/ 232	34.		/ 239
11.		/ 232	35.	·	/ 239
12.		/ 232	36.		/ 239
13.		/ 232	37.	,	/ 240
14.	·	PDF	38.		/ 240
		/ 233	39.	·	/ 240
15.		/ 233	40.		/ 241
16.		/ 234	41.		/ 241
17.		/ 234			
18.		/ 235			
19.		/ 235			

- | | | | |
|-----|-------|-----|-------|
| 42. | / 241 | 10. | / 247 |
| 43. | | 11. | / 247 |
| | / 241 | 12. | |
| 44. | / 242 | | / 247 |
| 45. | | 13. | / 247 |
| | / 242 | 14. | 4 |

○ 여성가족부 243

- | | |
|----|-------|
| 1. | / 243 |
| 2. | . |
| | / 243 |
| 3. | / 243 |
| 4. | |
| | / 243 |
| 5. | |
| | / 243 |
| 6. | . |
| | / 244 |

○ 고용노동부 245

- | | |
|--------|-------|
| 1. | |
| | / 245 |
| 2. | / 245 |
| 3. () | |
| | / 245 |
| 4. | |
| | / 245 |
| 5. | |
| | / 246 |
| 6. | / 246 |
| 7. | |
| | / 246 |
| 8. | |
| | / 246 |
| 9. | / 247 |

- | | |
|-----|------------------|
| | / 247 |
| 15. | / 248 |
| 16. | / 248 |
| 17. | / 248 |
| 18. | |
| | / 248 |
| 19. | . |
| | / 249 |
| 20. | |
| | ('12.11.22. , 12 |
| | ,) / 249 |
| 21. | |
| | / 249 |

○ 방송통신위원회 249

- | | | |
|----|--------|-------|
| 1. | TV | / 249 |
| 2. | | |
| | / 250 | |
| 3. | 700MHz | |
| | / 250 | |
| 4. | | / 250 |
| 5. | | / 251 |

○ 국가보훈처 251

- | | |
|----|-------|
| 1. | / 251 |
|----|-------|

○ 금융위원회 251

- | | |
|----|-------|
| 1. | / 251 |
|----|-------|

2.	/ 252	○ 방위사업청 255
3. 「	」 / 252	1.
4.	/ 252	2.
○ 관세청 252		3.
1.	/ 252	4.
○ 병무청 253		5.
1.	/ 253	6.
2.	/ 253	7. 「
3.	/ 253	」 / 257
4.	/ 253	8.
5.	/ 253	/ 258
6.	/ 254	○ 경찰청 258
7. ‘ , ’	/ 254	1.
8.	/ 254	/ 258
9. 「	」 / 254	○ 소방방재청 259
10.	/ 254	1.
11.	/ 255	2.
12.	/ 255	/ 259
		○ 산림청 260
		1.
		2.
		3.
		4.
		/ 260
		/ 261
		○ 중소기업청 261
		1.
		/ 261

2. / 261

○ 특허청 262

1. / 262

2. (ATM) / 262

3. / 262

○ 식품의약품안전청 262

1. / 262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 7
- / 12
- / 13
- / 14
- / 32
- (http://nhf.mltm.go.kr) / 37
- / 41
- / 52
- / 60
- / 91
- / 106
- / 119
- / 120
- / 138
- / 146
- / 147
- / 148

- / 151
- / 152
- ‘ ’ / 153
- / 154
- / 191
- (3 → 2km) / 199

'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 3
- / 4
- / 6
- / 9
- / 17
- / 18
- (ATM) / 19
- / 20
- / 21

○		○	
	/ 27		/ 70
○	·	○	
“	” / 28		/ 74
○		○	
	/ 33		/ 79
○	·	○	
	/ 34		/ 80
○		○	
	/ 35		/ 81
○		○	/ 82
	/ 36	○	/ 83
○	,	○	/ 86
○		○	
	/ 43		/ 88
○		○	
	/ 44		/ 90
○		○	·
	/ 45		/ 92
○		○	
	/ 47		/ 93
○		○	
	/ 48		/ 103
○		○	/ 104
	/ 50	○ ()	
○			/ 105
(TPMS)	/ 54	○	
○			/ 107
	/ 56	○	
○			/ 109
	/ 57	○	()
○			/ 110
	/ 65	○	
○	,		/ 111
	/ 66	○	
○			/ 112
	/ 67		

○	/ 113	○ ‘	,
○	4		/ 174
	/ 114	○	
○	/ 115		/ 178
○	/ 117	○	
○	·		/ 179
○	/ 118	○	
○	/ 124		/ 180
○	/ 125	○	
○	/ 128		/ 182
○		○	/ 183
/ 129		○	
○	/ 130		/ 185
○	/ 131	○	
○	/ 133		/ 186
○	/ 134	○	
○			/ 189
/ 135		○	5
○			·
	/ 140		/ 190
○		○	
	/ 143		/ 195
○		○	FTA
	/ 150		/ 196
○	·		
○	/ 158	2월	
	/ 163	○	
○	TV		/ 23
○	/ 167	○	
○	·		/ 24
‘107	,	○	/ 25
/ 168		○	/ 71
○	/ 170	○	
○			/ 121
/ 172		○	
○	·		/ 127
/ 173			

○	○ 5	3-4
/ 139	('13.3) / 159	
○	○	
/ 141	/ 162	
○	/ 142	
/ 144	4월	
○ 「	○	/ 84
」 3	○ A	/ 137
2 / 155	○	
○ . .		/ 188
/ 160	○ .	/ 193
○	/ 164	
○	/ 166	
○	/ 171	
○	○ . .	/ 184
('13~'16)	/ 197	
, / 181	5월	
3월	○ 「	/ 8
○	○ .	PDF
/ 10	/ 42	
○	○ 20	
/ 72	(1)	/ 58
/ 76	○	/ 59
○ 3~5 全	○	/ 62
/ 87	○ PC	/ 78
○ .	○	/ 94
/ 116	○	/ 95
/ 123		
○ 「		
」 / 145		

○	·	·
	/ 97	
○		
	/ 99	
○	·	
	/ 100	
○	·	
	/ 126	
○		
	/ 175	
○		/ 187
○	·	
	/ 192	
○		/ 194

7월

○		
	/ 51	
○		
	/ 63	
○	·	/ 64
○		
	/ 73	
○		
	/ 77	
○		/ 100
○		/ 102
○		/ 136

8월

○		
	/ 29	
○		/ 55

9월

○	「	
	」	/ 22
○		/ 30
○	‘	’
	/ 49	
○	·	·
	/ 53	

10월

○		
	/ 75	
○	700MHz	
	/ 169	

12월

○		
	/ 11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 5	
○		/ 15
○		/ 26
○		/ 39
○		/ 40
○		/ 46

○

· / 68

○

/ 69

○

/ 122

○

/ 132

○

()

/ 149

○

,

/ 156

○

/ 157

○

/ 161

○

/ 177

○

(,

,

)

/ 198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금 융	6
3. 산업(중소기업·특허)	10
4. 환경·국토	21
5. 보건복지·여성(법무)	75
6. 고용노동	103
7. 행정안전(소방·경찰)	121
8. 보훈·국방	124
9. 교육·문화(방송통신)	157
10. 농식품·산림	172



1. 세 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10% , 20%
- 40% .
- (10%)
- ,
- ,
-

<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

- ▶ :
- ▶
 - ① (20%), (10%), (40%)
 - ② (10%)
 - ③
- ▶ : 2013.1.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3.1.1

- (50%
→ 75%) , (50%)
.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18 3)
(140
) 2012 2015 3

- .
2012
2015 3

- 13

,

※ : 2013.1.1(, '12.12.28)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13

3

<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

▶ :

▶

①

▶ : 2013 (,)

2.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를 보장 (기존 90%, 100%)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13.1.1.부터, 10% 20% , .
- 3 1 , () 15 .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 ▶ : .
 - ▶
 - ① () ,
 - ②
 - ③
 - ▶ : 2013.1.
- ※ 단,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3.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0 , '13.7 19) . ()
 - , (7) , (i) , (-) 50
 - (ii) (.) 30
- .
 - ()
 - ①
 - ② 6
 - ,
 - .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

- ▶ :
- ▶
 - ① (1~6)
 - ②
- ▶ : 2012.10.15.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13.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

▶

①

5%

▶

: 2013.6. 12

– . CP .

CP

—

3. 산업(중소기업·특허)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단지제도 개선

- ... ,
...
...
... 11
... '12 12
...
...
... '13 3
... 2
...

<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

▶ : ,

▶

① (2012.12)

② (2013.3)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MO)」

* 국내 C기업에서 “당”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개발(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 식약청에 위해 **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생산승인한 바 있음('11.6월)

• '13 12 LMO 22 3 22 4

*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7 2),



(22),



.(26 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

▶ ①

② ()

▶ : 2013.12.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자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 100
25
.
• 100 20
100 25 .

<2013년도 폐광지역개발자금 납부비율>

- ▶ :
- ▶
 - ① (20%→ 25%)
- ▶ : 2012.11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콜이행 실적 : 미국 ('08) 564건, ('09) 466건, ('10) 402건
일본 ('08) 106건, ('09) 94건, ('10) 103건

•

.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 :

▶

①

②

▶ : 2012.8.24.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
관리단

•

** 업무위탁 확대 내용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회계
등 다수
- 세부내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참고

☞ (관련법령) www.law.go.kr에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검색
(제14조)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

▶ :

▶

① * ()
**)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회계
지원 등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 : 2012.11.6.

[illegible]

75%

- **산학연 도약기술개발 :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기존 전국, 국제, 중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합 개편)**

, '13 1

• (3) , , .

• , 1 ‘13
1 ~ 9 .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

,

.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 ▶ :
- ▶
- ① : , , , , ,
- ② : , , , , ,
10~20 ()
- ③ : (: 1)
(80%, 20%)
- ④ : → · → →
→ → →
- ▶ : 2013.1.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1.1.부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는 30% 감면되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감면된다.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
 - 2013.1.1.부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 ①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는 30% 감면되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감면된다.

② 2013.1.1.부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 : 2013.1.1.

- ※ (A type)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B type)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 ☐

- :
 - - ①
 - ② (ATM)
- : 2013.1.1.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 *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
- , 2013
- ,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 :
- ▶ ① ('13)
- ▶ ②
- ▶ : 2013.1.1.

4. 환경 · 국토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
(TOC)
- ,

<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 :
- ▶
 - ① 3 (17 → 20)
- 1,4- ,
 - ② (TOC)
- .
- ▶ : 2013.1.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9 27 「
」

- 4 (DNOP,
DINP, TBT,)

.(‘12.9.27)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

- DNOP, DINP

*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 TBT, 「
」 *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

▶

① 4 (DNOP, DINP, TBT,)

- DNOP, DINP : (,) , TBT, :

▶ : 2013.9.27.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
정비사업으로 통합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

- ▶ :
▶
① 2
▶ : 2013.2.2.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30%

2013 2

※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 PM 43%가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에서 배출('09년 CAPSS 자료)

- 2013 , 2 Tier-3
, 2015 Tier-4

•

2013 2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

▶ :

▶

① , Tier-3 ()

② . (:

)

▶ : 2013.2.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2013

8
, 2013

- 2013 , 2014

(PM10) (PM2.5)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 ▶ :
- ▶
 - ①
 - ② ,
(,)
- ▶ : 2013 ()
- ▶ : 7 2(.)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1
()

• 2006

• 2011 12

, 1

2013 1

■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 ,

▶

①

()

▶ : 2013.1.1.

감정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

<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감정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제정·개정·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제정·개정·폐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안)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13년초 시행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233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

▶

①

②

③

► : 2013.8.()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
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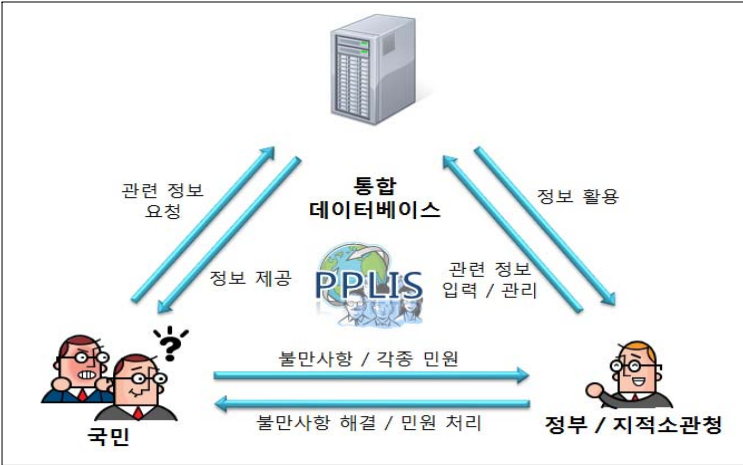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PPLIS)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PPLIS 운영계획 모델>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 :
- ▶
 - ①
 - ②
- ▶ : 2013.9.()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0.5%p
0.5%p ' 12.12.21 .
• .
(4.0%),
(4.2%), . (5.2%)
0.5%p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4.0%	3.7%	< > - (1.0→0.5%), . (0.5→0.2%) ()
		5.2%	4.3%	
		4.2%	3.8%	
		5.0 ~ 6.0%	3.8 ~ 4.0%	4.8%(60㎡)
		3.0 ~ 4.0%	2.7 ~ 3.7%	2% ('13)
		3.0%	2.7%	-

• (' ,)
0.5%p .

구 분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2.5%	3.5%	4.5%
	2.0%	3.0%	4.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 :

▶

① . (4.0%), (4.2%), . (5.2%)
0.5%p

② () 0.5%p

▶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3 * 3 5	() 4 * 4 5
	3 * 4	() 4 * 5
	5	() 5 5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 :
- ▶
- ①
- ▶ : 2013.1.2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

• **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 +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 10년이상 보유

• ‘7’

• , ‘10’

■ 2007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

▶

①

• () 5 →7 , () 10
→

• () 60㎡ →

▶ : 2013.1.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
- **

* 착오기재 사례: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

- ,

■ ,

*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 다만,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 :
- ▶
 - ①
 - ② .
- ▶ : 2013.1.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법」 제41조제1항제2호(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에
)
· 「주택법」 제41조제1항제2호(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에
· 「주택법」 제41조제1항제2호(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에
()

■ 「주택법」 제41조제1항제2호(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에
· 「주택법」 제41조제1항제2호(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에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

▶

①

,

▶ : 2013.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 ▶ : ① , , 「 」
- ▶ : 2012.12. (<http://nhf.mltm.go.kr>)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2 , 4

,

2 , 4 1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

▶ : ,

▶

① 500

()

② (, 2)

▶ : 2013.1.(,)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인근 동(棟)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

▶

① ,

▶ : 2013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 , 10

- , 1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

▶

①

▶ : 2013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

2006 9 25 ('09.7.1)

1

3

- 2014 12 31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① 2014 12 31

$$\left(\begin{array}{ccc} & & 4 \\ & &) \end{array} \right)$$

► : 2012.12.18.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C (PDF) .
- (CAD) , .
- - , / .
- 2012 PDF (1/5,000) , 2013 (S/W)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 “나만의 맞춤형지도” 만든다.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 ▶ :
- ▶
 - ① PDF , 2013 (1/5,000)
 - ② (S/W)
- ▶ : 2013.6.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Q·TP)
- (TP)
- , (SOQ)
- (10) 20
- ,
- , PQ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

- ▶ : PQ ,
- ▶
 - ① ,
 - ② PQ
 - (2 →4)
- ▶ : 2013.1.(), 2013.4.(PQ)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2)

,

.

-

,

.

• , 70%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	
▶	:
▶	
①	
②	
▶	: 2013.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

▶ :

▶

①

②

③

▶ : 2013.1.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文部科学省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 등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

▶

①

► : 2013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0%

20%

5%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 : 20%
- ▶ ① 20%
- ▶ 5%
- ▶ : 2013.1.1.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 :
- ▶ ① 12.5%
- ▶ : 2013.1.1.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만금사업추진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새만금사업은 '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관광·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6 ()



『 』 2013 9 ‘ ’

• 6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 ▶ ‘ ’ : ‘ ’ 『 』 172 (‘12.11.22)
- ▶ ① ‘ ’ ()
- ② ‘ ’
- ▶ 시행일 : 2013.9.11.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CTV()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 :

▶

① ,

② .

▶ : 2013.1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m²

• (, 80%)

•

※ (민간공원제도) 10만m²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이상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도시공원법 제21조의2)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공원법시행규칙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

▶ : 10 m²

▶

•

☞ (현행)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 (개정) 기존 요건에
'공원조성비 4/5 예치' 요건 추가

▶ : 20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

- ▶ :
 - ①
- ▶ :
 - * 고지의무자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
 - ② 100
- ▶ : 2012.12.1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9

, 6 ()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

▶ :

▶

①

·

*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2013.9.1.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 , (TPMS)

• (TPMS)

, 2013

3.5

(TPMS)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 :	
▶	
①	3.5 , ,
▶ :	2013.1.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5

3.5

,

•

.

-

4.5

→

(

'13.8.16)

* 최고속도제한장치 : 승합차(110km/h), 화물자동차(90km/h)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

:

▶

①

▶

: 2013.8.16.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2013 1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 :
- ▶ ①
- ▶ : 2013.1.1.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

「

」

5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

▶

①

-

50%

▶ : 2013.1.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
자에게 20년(1회 연장)
까지 국유지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1)

•

(5)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

▶ :

▶

① 20 (1)

②

▶ : 2013.6.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0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

▶ :

▶

①

②

20

▶ : 2013.6.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물류주선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익과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포워딩(forwarding)’업이라 부름

- 3
- 2 6
2013 6 30
- ,
(1) (200)
- 30 60 , .
15 30
- 6 1 ,
- , (Apostille)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추진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

▶ :

▶

① (3)

② (→)

③ (30 → 60)

④ , , , (15 → 30)

⑤ (6 → 1)

⑥

⑦ (Apostille)

▶ : 2012.12.3. ('12.12.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

▶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13.6.
*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2.10)

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2.12월 개정안 국회제출)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

▶

•

()

-

,

▶

: 2013.7. ()

* 개정법률안 입안('12.12~)

과징금·벌금 병과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2.12월 개정안 국회제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징금·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

-
-
- ,
-
- 1
- 1
- 3
-
- : 2013.7. ()

* 개정법률안 입안('12.12~)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

• (234)

* '12.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3,612건) : 수도권 1,570건, 지방 2,042건

• ,
'13 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

▶ :

▶ ① (2012 11)

▶ : 2013.1.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12.8.4.)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12.11)하고,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illegible]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 ▶ :
▶
① ,
▶ : 2013.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1)

• 20 , 10

“ ” ,

500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

▶

①

“ ” ,

“ ”

▶ : 2013.1.1.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5m
*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

▶ :

▶

① (A~D)

② 1.2

15m

▶ : 2013.1.()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

▶ : ICAO

▶

①

▶ : 2013.1.()



•

울산, 포항, 사천공항

•

•

,

9

9

,

2

•

비상대책계획 수립>

▶

$$\vdots$$

▶

(15

)

▶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27)



*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자가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공항운영자 신설>

▶ :

▶

① 「 , 「 」

②

▶ : 2013.2.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9 5

- 2012 12

3 100%, 2 50%

- 2013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

▶

① (, 3
100%, 2 50%)

②

▶

① : 2013.1.

② : 2013.3.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COD) 3.8
→ 3.3mg/L, (TP) 0.074→0.065mg/L
COD 7,241.3kg/ , TP
193.00kg/
* '10년도 COD 배출량은 7,761.7kg/일, TP는 203.11kg/일이며, 총량관리
미시행시 '17년도 COD 배출량은 8,703.5kg/일, TP는 251.54kg/일임
- . . . ,
COD 1,462.2kg/ , TP
58.54kg/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시화호 총량관리 시행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 :
 - ▶
 - ① : , / '13.7.1~
'17.12.31
 - ② : (. . .)
482.94km2
 - ③ : (3.3mg/L), (0.065mg/L)
 - ④ : (7,241.3kg/), (193.00kg/)
 - ⑤ : (1,462.2kg/), (58.54kg/)
 - ▶ : 2013.7. ()
- ※ 2012년 12월까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정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 「
」 23
, ()
*

*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폐수, 폐수오니, 수산
가공 잔재물, 원료용 동·식물 잔재물, 준설토사, CO2 스트림

• ,
*, **,

* 배출해역은 한일, 한·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
** 런던협약/의정서에서는 음폐수, 분뇨,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13 ,

* 가축분뇨, 하수오니 : '12.1.1부터 해양배출 금지 (완료)
* 산업폐수, 폐수오니 : '14.1.1부터 해양배출 금지 (예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해양환경관리법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축소>

- ▶ :
- ▶
 - ①
 - ② '13
- ▶ : 2013.1.1

5. 보건복지 · 여성(법무)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 □ □ □ □ □ □ □ □ □ □ □
(☎ 02-2023-7418, 8756)



• (), (TS-1) 13
5%

• , , ,
, 2013 10

■ , 2012 75
2013 7 50%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 : 「 」
- ▶
- ① () (50% → 5%)
 - ② (TS-1) (100% → 5%)
 - ③ (→)
 - ④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Hib(b)
2013 3 5
- , 65
2013 5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 : 65
- ▶
 - ① Hib(b)
(→ 5)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② 65
(→)
- ▶ : 2013.3. (65 5)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
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 107 2013

•

5 ,

- 2013 3

19

•

5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

▶

① (107 →144)

②

(5 /)

▶ : 2013.7 ()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6 PC

• PC

, 13 6

PC

• ,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

▶

① , ,

PC

▶ : 2013 6 8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 '13 1 1' () , ,
- 100원 초과 1,000원 이하인 경우, '13 1 1' () , ,
- 1,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인 경우, '13 1 1' () , ,
- 100,000원 초과 1,000,000원 이하인 경우, '13 1 1' () , ,
- 1,000,000원 초과인 경우, '13 1 1' ()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 :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 '13 1 1' () , ,
- ▶ ① 100원 초과 1,000원 이하인 경우, '13 1 1' () , ,
② 1,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인 경우, '13 1 1' () , ,
- ▶ : 2013 1 (' 13 4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2013
▶	2013	2013
①	2013	2013
→	2013	2013
②	2013	2013
'13	2013	2013
③	2013	2013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2013	201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2, 2013 2
-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 ▶ : 2
- ▶
 - ① (1 → 2)
 - ②
 - () : 35~86 → 361~886
 - () : 35~52 → 361~886
 - : 83~664 → 86~684
 - * 최종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 ③
 - / : 8,300 /9,300 → 8,550 /10,260
 - ④
 - / : 4,000 / : 6,000 /
- ▶ : 2013.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32

• 2013 1 27

<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

▶ :

- *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 (인권위, '08.7.15)
- * 외국인 지위·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국무조정실, '07.12.5)
- *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법무부)

▶ :

①

②

- 6

- 31

10 1

- 2 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 2013.1.2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13 4 .
- ‘ 100% ’
- , 2013 150% 9
- 100% 150%
- , 18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 :
- ▶
 - ① (100% → 150%)
 - ② (31→40)
- ▶ : 2013.1.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

▶ . (21 , 14)

- .

- .

(7)

· , , , ,
 , , , ,
 , , , ,
 , , ,

▶ : 2013.4.1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4
3 (180)
.
• 1 3
180 , 4 100 ,
2013 4 180
.
- , 4
3 (300)
.

<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 :
- ▶
 - ① (4 : 100 →
180)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 : 2013.1.

만 3~5세 어린이
 숲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2012 3 '5 ' 2013 3
 3~5
 - 3-5 ' 3~5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 숲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 : “ ”
- ▶
 - ① ()
 - ② (70% → 숲)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 : 2013.3.

☐

-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136백만원

- ,
(4.17→1.04%)

☐

-
- 50 75

- 1 (30) 9.5% 163,147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

- ▶ :
- ▶
 - ①
 - ② (4.17%/
 - 1.04%/)
 - ③ 3.4%
 - ④ (50 →75)
 - ⑤
 - ⑥ (.)
 - ⑦ 30%
- ▶ : 2013.1.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
○○○○○○○○○○○○○○○○○○

■ 2013

• () () ()
, () , 2013 1
- 1577-24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 , , ,
- (ADHD) .
- (9 ~18) .
- (3 , 1), , , , , (2 , 1).
- 30 (1) , .
- , , , , .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 031)333-1900

☞ (참고)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www.nyhc.or.kr)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 : .
- ▶
- ① : , , ADHD .
9 ~18
- ② : , , ,
- ③ : 30 (),
- ④ : , , , ,
- ▶ : 2012.12.17.

□ □ □ □ □ □ □ □ □ □ □ □
□ □ □ □ □ □ □ □ □ □ □ □ □ □

⁴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013 1 1 7
- 2005
8 5 ,
- 2013 12
5 7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

구 분	'05년	'08년	'09년	'10년	'13년
	6	8	10	12	12
	5	5	5	5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 :
- ▶
- ① 12
5 7
- ▶ : 2013.1.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6.19

- , , .
- , , .
- ,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 :
- ▶
 - ①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②
- ▶ : 2013.6.19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10 25

• 500

• , 19
()

■

• ,
2 , 2013 6 19

■

• , 2013 6 19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자원 확대>

▶ : .

▶

① (2012.10.25)

- 500

-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 (확대)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② (2013.6.19)

'12년	'13년 6월~
. : 6 *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	① : 6 (1 6 1) ② : 2 () ③ () : 19 (2 1) ④ : 2 (2 1) ⑤ : ④

③ (2013.6.19)

- : , , ,

- :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6
19 .
■ .
•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

조항	내용	현행	개정안
7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5	5
		3	5
		1 5 ~2	2 1 ~3 ,
11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5	5
		7	10
		3 2	7 5
		2	1 2
		1 10	3
1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5 3	1 ~10 2 ~5

■ .
• ‘ .
• , ‘ .
• ,
• (PC),
• ,



- 「www.sexoffender.go.kr」
()
() .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 (.
)
(), , ,
.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 : .
- ▶
 - ① (,
)
 - ② (5 → 5 ,
3 → 5 , .
. . 5 → 5)
 - ③ (13
→ 13 ,)
 - ④ (.
)
 - ⑤ .
 - ⑥
- () ‘ . . ’→()
‘ . .
- , (PC),
,
 - ⑦ (, .
)
 - ⑧ (,
)
- ▶ : 2013.6. (, 2012.12.)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19

• 2013 6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 법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

▶

① ,

② , ,

③ ,

④

▶ : 2013.6.19(「 」)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7
- 2014 1
•
2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관련뉴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

- ▶ :
- ▶
 - ①
 - ②
 - ③
- ▶ : 2013.6.19
 - ※ 2012년 11월 현재 예산 심의중으로 시행 시기 변경 가능
 - ※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관계등록예규, 판례(94다1302)에 따르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



2013 7

•

, , ,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

▶ :

▶ :

①

②

③

▶ : 2013.7.1.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7 1
,
,
,
,
.
• ,



• 15
,
(19)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

▶ :

▶

①

②

③

▶ : 2013.7.1.

6. 고용노동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720)

• 2013 * 17

(U)

* 신성장동력 산업

녹색기술산업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 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융합관광

** 국내복귀(U턴) 기업: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

▶

① 17 10 (2)

② (U)

③ : 1 1 720 (2 , 20)

▶ : 2013.1.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50 860 , 6 2
3 4

•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 : ,
- ▶
 - ① 6 3
 - ②
- ▶ : 2013.1. (.)

2013

- 2012 1 90%, 2 80%, 3 70% ,
- 2013 1 90%, 2 70%, 3 50% 2~3년차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 : () 2013
- ▶
- ①
- | | | | | |
|------|-----|--------|--------|-----|
| 2012 | : 1 | 90%, 2 | 80%, 3 | 70% |
| 2013 | : 1 | 90%, 2 | 70%, 3 | 50% |
- ▶ : 2013.1.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11
30% , 50%

- 3 100 , 100 300
, 300

현행	개정	
30%		
50%		
30%	100	100 15
25%	100 300	100 10 + 5
	300	100 5 + 2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잡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 :

▶

① 100

② 100~300 10%+5 ,

300 5%+20

▶ : 2012.12.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13 1 626,000 3/4
- , 1/2 ~3/4 1/4 782,500 1/2 939,000 1/2

〈현행: 3단계〉

산정기준	부담금
1/2	(1 59)
1/2	(88 5)
	(95 7)

⇒

〈변경: 4단계〉

산정기준	부담금
3/4	(1 626,000)
1/2~3/4	(782,500)
	(939,000)
	(1,015,740)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 2013

1,015,740
100 199

※ 공공기관 · 300명 이상('11.7.1.) → 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 (참고)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 :

▶

① : $\frac{3}{4}$
 , $\frac{1}{2}$ ~ $\frac{3}{4}$
 + $\frac{1}{4}$, $\frac{1}{2}$ +
 $\frac{1}{2}$

②

100

※ 공공기관 · 300명 이상: '11.7.1.부터, 200~299명: '12.1.1부터, 100~199명: '13.1.1부터

▶ : 2013.1.1.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1~2 , , ,
- 400,000 ,
1 5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 ,

▶

① : () .
() 50 ,

② : 40 ,
1 5

③ : 1 ~ 2

▶ : 2013.1.

※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
실습 훈련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3 3~6

· ,
- 1 12,000 , 1 1
17,650 .

- ,
· .

<자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 ()
- ▶
 - ① : 3,
 - ② : (4)
 - ③ : 3~6
 - ④ : (1 12,000), (1 1
17,650)
- ▶ : 2013.1.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2

201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 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

- ▶ : .
- ▶
 - ① : (), ,
 - ② : , , ,
- ▶ : 2013.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100 50 ,
100 50
,
15 30
100 30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을 요건 조정>

▶ :

▶

①

50%

15 30

②

50% 30%

► : 2013.1.()

※ 개정안 입법예고중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2013	1	1	4	1	
•	2010	12	1	4		
-		2010	12	1	2012	12 31
		*	100	50		
-	2013	1	1			
	100	1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의미함						
•	2013.1.1					
	1			1		3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80%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조('13. 1. 1. 오픈 예정)

안전인증 ·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기계 ·
기구 확대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3 1

 () 3 * , ,
 , 13 **
 .
 - , .

- * 안전인증: 기계 · 기구등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 · 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 · 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2013년도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

▶ :

▶

① (8 → 11)

② (3 → 13)

▶ : 2013.3.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10
60%

33%

• 10

—

<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

▶ :

▶

① 10

② 1,000 ()

► : 2013.1.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 38 4 80 8

- 「 」

(2012-9 , 2012.1.26.)

• 1,900
15,000

- 201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9호)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평가>

- ▶ :
- ▶
 - ①
 - ② ,
- ▶ : 2013.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19

•

,

60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

① (18 → 19)

② (60 →)

▶ : 2012.12.18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
보험 가입할 수 있다

<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

- ▶ :
 - ▶
 - ① : 『 』 2 . .
 - ② : () ☞
() ☞ () ☞
() ☞
- *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
- ▶ : 2012.11.18.

7. 행정안전(소방·경찰)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

- : 2013 2 23

- : 2013 2 23 ~ 8 22

(6)

, 150m² 5 * : 2015
2 23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

▶

① 1 1 (1)

② 2

③ 1 1

▶ : 2013.2.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2012 21 30
 - 2013 21 40 .
 - () 40 .
- .
- , , , , , 5
 - 3 (, ,)
 - 2 (, , , , , 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
- ① : 30 → 40
 - ②
 - () , , , ,
 - () < 3> , , , , , 中 2

• ()
28 * 2013.3.22
()
5, 8, 16

① 빈집등에 침입, ② 흉기 은닉휴대, ③ 폭행 등 예비, ④ 거짓신고, ⑤ 시체 현장변경 등,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⑦ 관명사칭,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 ⑨ 의식방해, ⑩ 타인의 가족·기계 무단조작, ⑪ 위험한 불씨 사용, ⑫ 거짓 인적사항 사용, ⑬ 자칫해서 징수 등, ⑭ 총포 등 조작장난, ⑮ 장난전화 등, ⑯ 지식재산 괴롭힘, ⑰단체가장 강요, ⑱과다대출, ⑲지체채취 불응, ⑳무임 승차 및 무전취식, ㉑물품강제정액행위, ㉒광고물 무단다발, ㉓길행위, ㉔등 물등에 의한 행패, ㉕출판물 부당거래, ㉖거짓광고, ㉗업무방해, ㉘암표매매

<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 :
▶
① ,
② ,
③
▶ : 2013.3.22. (「 」)

군 책임운영기관	
•	

• 2013

4,600 7,200

– , 4,000

3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 '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실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

- ▶ : ,
- ▶
- ① , 3 ,
- ※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14개)
-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 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 공군83정비창
- ▶ : 2013.1.1.

3
2~3

■ , 2013 6

- ① 3 .
- ② .
- ③

▶ : 2013.6.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 $\mathbb{R}^n$: $\mathbb{R}$
- ▶ $\mathbb{R}^n$: $\mathbb{R}$
- ▶ $\mathbb{R}^n$: 2013.2.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

구 분	이등병→일등병	일등병→상등병	상등병→병장	병장→전역
현 행	5	6	7	3 (해군 5, 공군 6)
조 정	3 (-2)	7 (+1)	7	4 (해군 6, 공군 7) (+1)

▶ : 2013.1.1.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3

*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

▶

① 3

② / ()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
증명서,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

▶ : 2013.1

- ▶ : ①
- ▶ : 2013.1.1.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www.yebigun1.mil.kr/\)](http://www.yebigun1.mil.kr/)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 :
▶
① ,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 2013.1.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 ▶ :
1
▶
① : 56
()
② : 3 (, ,)
③ : 2013 ~2015
▶ : 2013.

병 봉급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15% .

- ,
.

<병 봉급 인상>

- ▶ :
- ▶ : 2012 15% (:)

구 분	계급	2012년	2013년	증액
병 봉급 인상(15%)	이등병	81,500	93,700	12,200
	일등병	88,000	101,200	13,200
	상등병	97,500	112,100	14,600
	병장	108,000	124,200	16,200

- ▶ : 2013.1.1.(,)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

-

.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 :
- ▶
 - ① 10% (: 15,000 → 16,500)
 - ② 10% (29,700 → 32,700)
 - ③ (→)
- ▶ : 2013.1.1.(,)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2012
2013

「 」 .

- 3

,

—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 : ‘12~’ 16 「
」
- ▶
- ① . 3
- ②
- ▶ : 2013.1.1.

군 병원 외래진료
서틀 운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6
• 2013	.
2013	.
•	,
1	.

<군 병원 외래진료 서틀 운영 확대>

▶ :

▶

① . : 2012 1 ~ 2013 6
* 노선 : 고양 4개, 홍천 3개

② . , 2 : 2013 7 ~
* 노선 : 양주 4, 일동 3, 춘천 3, 강릉 2, 해병2사 1개

▶ : 2013.7.1.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A
2013
- .
- 2013 1
3 ,
2014 , 2015
A 1
 - A
- .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 : A 2012
- ▶
 - ① 2013 1
A
 - ② 2014
 - ③ 2015 .
- ▶ : 2013.4.1.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10 ‘

,

.

•

,

.

- , 42,000 “ ”

.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

“

”

,



①

“

”

,

②

- 2012 3 ~ :

- 2012 7 ~ :

※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

- 2012 9 24 : ()

- 2012 10 1 ~ :



: 2012.10.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 :
 - ▶
 - ① 「 」, 「 」
 - ▶ : 2013.2.()
-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 「[방위사업법](#) 제 45조 제 2항

• 「[방위사업법](#) 제 45조 제 2항

(Level 4 : 0.5%p /

Level 5 : 0.75%p / Level 6 : 1%p) .(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 :

▶

① 「[방위사업법](#) 제 45조 제 2항

(1%p)

▶ 시행일 : 2013.1. (잠정)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20%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 :

- ▶

①

20%

5

- : 2013.2.()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50%)

·

· , ‘ ,

5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

① (50%)

② 「 5

▶ : 2013.2.()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50 (5 2 0.5%p
5 , 1) 30%
- ,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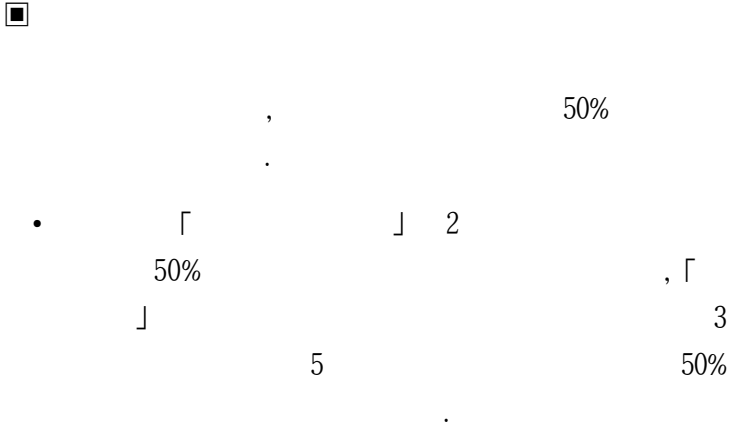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 ① (0.5%p)
 - ②
- ▶ 시행일 : 2013.1.(잠정)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	:			
▶				
①	10	2	5	3
▶	:	2013.2.()		
※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 2013 3

(“ ”)

• ,

●

□ '09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 '09

▶

$$\textcircled{1} \quad (\quad)$$
$$\textcircled{2} \quad (\rightarrow)$$

▶ 시행일 : 2013.3.19.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12

-
-
-
-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

▶

- ① , ,
- ②
- ③ .

▶

- ①
- ②
- ③ .
- ④ .

▶ 시행일 : 2012.12.18.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2012 12 21

.

•

2002

5~6

1

.

•

,

()

,

.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

(2005 6)

▶

①

:

384

②

- : 7,885㎡, 5,558㎡(1 , 3)

- : 2011 4 / : 2012 12 17 (:
'12.12.21.)

③

- (→

1.5km)

- . ,

▶

: 2012.12.21.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9

,

<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

▶ : 19

▶

①

19

▶ : 2012.12.20.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다만, 의대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 :
▶
① ,
▶ : 2013.1.1.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200

100

.

•

, 「

」

200

, 「

」

140

2013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

▶

:

▶

①

(200

→ 100)

▶

: 2012.12.20.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15
· 2 10 2
10
·
- ,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 ▶ :
- ▶
 - ① (2 10
→ 15)
 - ② (→
)
- ▶ : 2012.12.20.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1.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2.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3.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4.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5.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6.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7.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8.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9.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10.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71세 (30 → 35)로 상향 조정한다.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①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1.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2.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3.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4.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5.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6.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7.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8.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9.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10.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한다.

▶ : 2012.12.20.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6) 2013
- 1 2 .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3년도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시기 조정>

- ▶ : (6) 「 」
- ▶
- ① 「 」 1 (3 → 2)
- ▶ : 2013.2.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 3
 - ,
 -
- 6·25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 :
- ▶ :
 - ①
 - ② , 6·25
- ▶ : 2013

9. 교육·문화(방송통신)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

.

시·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주요내용>

- $(\quad)$
- $\quad, \quad 5$
- $\quad, 1\sim 2 \quad.$
- $\quad. \quad 4 \quad 3\cdot 4$
- $\quad, \quad 1 \quad (\quad 2 \quad) \quad 4$
- $\quad$
- $\quad. \quad (\quad 4 \quad)$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13.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3 3~4 5
- '13 3 3~5 ,
 - '3-5 ,
 - 2013 3-5
 - 3-5

〈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구 분	연령	2012년	2013년
, (	5	, 20	, 22)
	4	70%, 17.7	
	3	70%, 19.7	

※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12년) 5.9만원→('13년) 6만원

☞ (참고) 교과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2 .

-

1

,

※ ,

• ,

, 2013

☞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201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 : , ,

▶

① ((父) · (母))

②

▶ : 201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70%
2013 100%
- , 1 2012 48 (4)
2013 60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40%	70%	100%
1	36 (3)	48 (4)	60 (5)
	1,758	2,880	3,388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3 1

“75 ” “80 ”

- , (13.1
) ‘ . ,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횟수〉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 이상	2년제	3년제 이상		5학기제 이상	4학기제
2013.3.1	1	2	2	2	2	2	1
2013 ()		1	1	1	1	1	

• 3
2 (,) 2012 ,
(,) 2013 .

- , 1 ‘ ()’
‘ ()’
, 2 ,

- ,
2013 9 1
‘ , ,
3 (5) .

☞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

▶

① .

②

③

④

▶ : 2013.1.1.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2 18 .

*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

- 2005 , 「 」 .
- , () ,
• , ,
- 1 2 ,
「 」 16 2 1
(1) .

☞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 :
▶
①
(1 2 ,
·)
② 「
」
▶ : 2013.2.18.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 □ □ □ □ □ □ □ □ □ □ □ □ □ □

■ * , 「 」 ('12.12) . , .

*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 :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12.8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①

②

③

▶ : 2013.2.()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00000000000000000000

- 2013 1 TV TV (HD) .
- 2012 12 31 TV TV .
- TV TV *
- (UHF) .
-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

구 분	경남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강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수도권
	'13.1.4	'13.1.9	'13.1.16	'13.1.23	'13.1.25	'13.1.30	'13.2.6	'13.3.31

※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 TV TV .
-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

■ . 2013 1

『107 』 .

• (, , SMS)
 , 2013 1 1

107 .

-

,

.

*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

☞ (참고)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relaycall.or.kr>)

<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

▶ :

▶

① 107

② (107)

▶ : 2013.1.1.

• , 700MHz
(13.10)

※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 시 생산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1월 1일부터,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를 강화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20cm 이내로 강화한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20cm 이내로 강화한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

- ▶ : ()
- ▶
 - ① (→ /)
 - ② (→20cm)
- ▶ : 2013.1.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 □ □ □ □ □ □ □ □ □ □ □ □ □ □ □



•

, 2013 2

-

100

100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

▶

:

▶

①

②

1,000

③

▶

: 2013.2.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013년도에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 :
- ▶
 - ① . , ,
5 .
- ▶ : 2013.1.1.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민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민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

•

3

•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마당>보도자료)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	
▶	:
▶	
①	()
②	(,),
▶	: 2013.1.1.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
-
-
- 12
- () , , ,
(,) 16
.
- (, 12) , , (),
, , , , , , , , , ,
- (, 16) , , , , ,
(,), ,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 $$\begin{aligned}
- & \quad : (\quad) \quad 1/2 \rightarrow (\quad) \\
- & \quad : (\quad) \quad \rightarrow (\quad) \\
- & \quad : (\quad) \quad \rightarrow (\quad) \\
& (2 \quad)
\end{aligned}$$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201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 : .
- ▶
 - ①
 - ② (12 → 16)
 - ③ (→ . ,
→)
 - ④
 - () 1/2 → ()
 - () →
 - (2)
- ▶ : 2013.6. ()

※ (참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2013 (3)

”

•

— , ,

,

<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

▶ :

①

: 2013 ()

※ 미국 내 입법절차(의견수렴, 60일)가 진행중이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3.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30일 이후 시행)

-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150일)

-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150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 :
- ▶
 - ① ()
- ▶ : 2013.1.23.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65)

2013 1 “

” “ ”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 ▶ : ,
- ▶
 - ① ()
- () : 19 65 , : 30 60
→ () . 19
()
- ▶ : 2013.1.1.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60
2013 64
·
- ,
·
()
70
75
·

☞ (참고) 농림수산물식품부>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서>영농규모화사업,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 :
- ▶
 - ① (60 → 64)
 - ② (70 →
75)
- ▶ : 2013.1.1.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13~'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3 2013
,
- (, , ,)
2013 ~2016

〈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

(: m²)

규모	기업	전업	준전업	소규모
	'13	'14	'15	'16
	1,200	600 ~1,200	300 ~600	50 ~300
	2,000	1,000 ~2,000	500 ~1,000	50 ~500
	2,500	1,400 ~2,500	950 ~1,400	50 ~950
	2,500	1,300 ~2,500	800 ~1,300	50 ~800

-
-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m², 돼지 등 50m² 초과 사육시설 → (변경)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
-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돼지·닭·오리) → (변경) 11종 우제류·가금류

☞ (참고) 농림수산물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
- ▶
- ① (, , ,)
2013 ~2016 (
- 1)
- ②
- ▶ : 2013.2.23.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12~
15% .

* 지원규모 및 조건(안) : 1,2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 :
- ▶
 - ①
 - () : 1,200 (3%, 2)
- ▶ : 2013.1.1.

※ (참정) '12.12.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40

•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

• ,

▶

① 2013 3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 2013.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 2012 3
(‘13), (‘14),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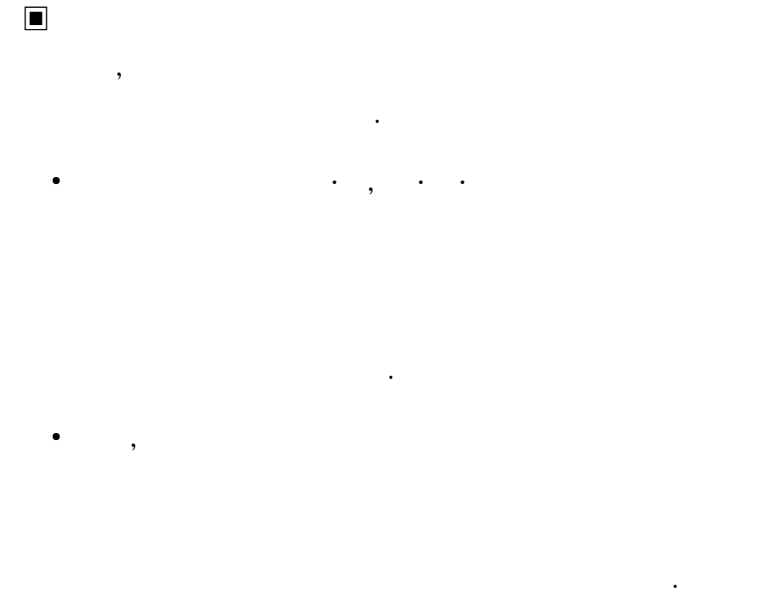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

<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

- ▶ :
- ▶
 - ① ‘13
 -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육우·젖소
- ▶ : 2013.5.()
 - ※ (잠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

☞ (참고) 농림수산물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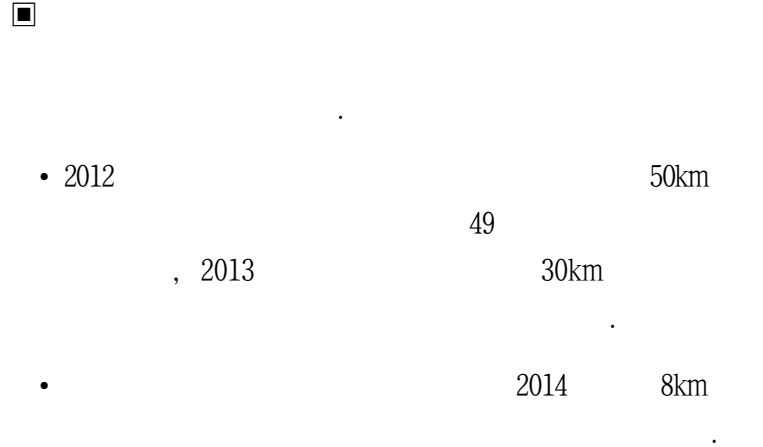
▶ :

▶

①
②
- : , ,

▶ : 2013.1.1.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 (참고)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서>공지사항>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 :

▶

①

- 50km → 30km

▶ : 2013.1.1. ()

※ '12.12.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기수산물 :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 :

▶

①

②

▶ : 2013.6.2.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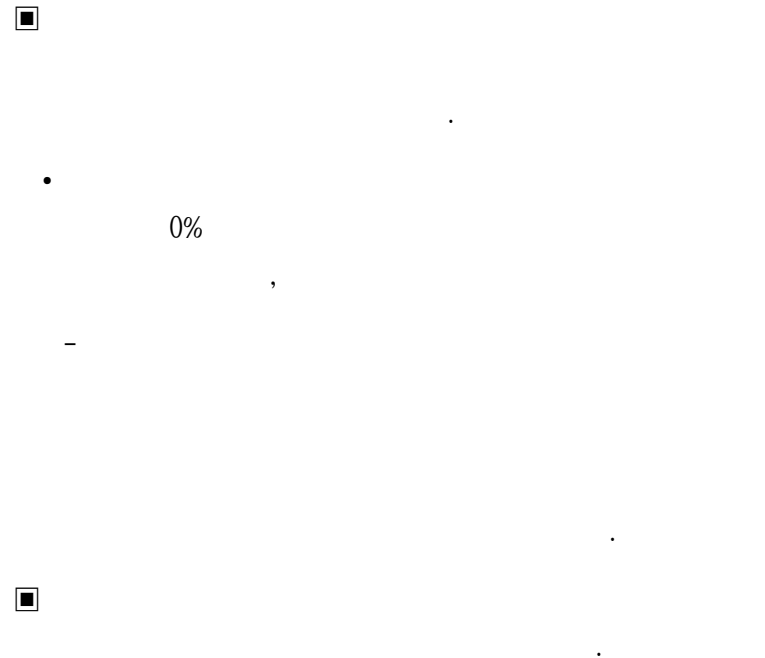
▶ :

- ▶
①
②

▶ : 2013.4.23.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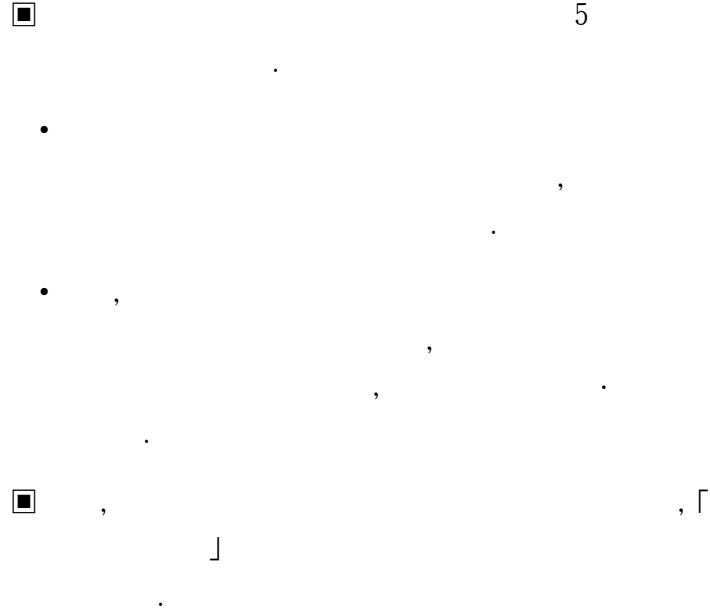
▶

①

②

▶ : 2013.1.1.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

<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

- ▶ : . .
- ▶
 - 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km²확장(764km² → 776km²)
 - ② ‘B’ , 43km² (133km² → 176km²)
 - ③ ‘C’ , 36km² (102km² → 138km²)
- ▶ : 2013.1.1.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물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 □ □ □ □ □ □ □ □ □ □ □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3%’ → ‘10%’
 - ‘20%’ → ‘10%’
 - ‘10%’ → ‘3%’
 - (3)
 - 50, 1,000, 500)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 ‘3%’ → ‘20%’
 - ‘20%’ → ‘10%’
 - (3)
 - 50, 1,000)

☞ (참고) 농림수산물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 ▶ : ()
- ▶
 - ① (3% → 10%)
 - ② (20% → 10%,)
 - ③ (3% → 20%,)
- ▶ : 2012.12.6.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 일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 .

▶

① 「 . 」

② (, ,)

③

▶ : 2013.6.2.

비료 생산 · 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

① (3)

② ()

► : 2013.4.23.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 ‘5
3 , 2013
6 「 」 ‘7
1 ,

*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 ▶ :
- ▶
 - ① 7 1
(: 5 3)
- ▶ : 2013.6.2.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1.18)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

① 5

②

③ ,

▶ : 2013.1.18.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5

• .

• .

• .

☞ (참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

<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

▶ :

▶

① . . .

② ,

▶ : 2013.5.24.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26)
.
-
(. 70 , 30)
.
• , .
.

☞ (참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정기관 지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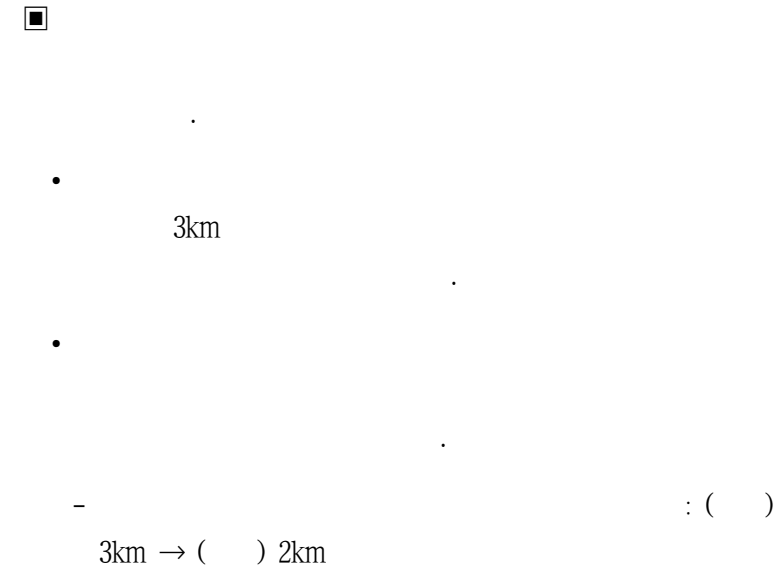
▶

① (, ,)

② .

▶ : 2013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3 → 2km)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 :

▶

① (3km → 2km)

▶ ()

① (3 3)

* '12.12.6부터 시행

② (7)

* '12.12.9부터 시행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03
○ 교육과학기술부	203
○ 법무부	206
○ 국방부	207
○ 행정안전부	210
○ 문화체육관광부	211
○ 농림수산물부	213
○ 지식경제부	219
○ 환경부	221
○ 보건복지부	223
○ 국토해양부	229
○ 여성가족부	243
○ 고용노동부	245
○ 방송통신위원회	249
○ 국가보훈처	251
○ 금융위원회	251
○ 관세청	252
○ 병무청	253
○ 방위사업청	255
○ 경찰청	258
○ 소방방재청	259
○ 산림청	260
○ 중소기업청	261
○ 특허청	262
○ 식품의약품안전청	262



기획재정부			
			()
' 12.12.28 , ' 13 1			
교육과학기술부			
1.	○	○	· ('12.11)
			(02-2100-6243)
2. ·	○ 2 ()	○ , , - ○ · ○ ○	('13.1)
	○ ·		(02-2100-6243)

			()
3. 5 3-4	< . > · 5 : . 5 · 3,4 r : L : < > · 5 : · 3,4 : 70% < > · · 3~5 5.9 (,) · · 5 20 · 4 17.7 · 3 19.7	< . > · 3,4,5 : . 3-5 · 3,4,5 : < > < > - 3~5 6 (,) < > · - 3~5 22	, ('13.3.1.) (02-2100-6556)
4.	o () o	o () ※ 온라인 신청 시,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o ☞ (참고)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13.2.) (02-2100-6521) (02-739-3744)
5.	o : 40% o : 1 36 (3)	o : 70% o : 1 48 (4)	- (02-2100-6415)

			()
6.	○ 100 75	○ - 100 75 , - 100 80 ,	(‘13.3.1.)
	○	○ () ‘ . ,	(02-2100-6482)
	○ : 3 - (1) , - (2) , - (3) ,	○ : 2 (2012) - (1) (), () - (2) , ※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12.8) (‘13)
	○ : 3 - (1) , - (2) - (3) ,	○ : 2 (2013) - (1) (), () - (2) ,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02-2100-6482)
	< >	○ , (‘13.9.1) 3 (5)	(‘12.8) (‘13.9.1.)
			(02-2100-6482)

법무부				
				()
1.		○ 19 ※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참고)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권 관련뉴스>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 미!!법률조력인	('13.6.19) (02-2110-3648)
2.		< >	○ . ☞ (참고)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알림마당>인 권관련뉴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 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	('13.6.19) (02-2110-3852)
3.	1	○	○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13.7.1.) (02-2110-3164)
	2	○	○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13.7.1.) (02-2110-3164)

				()
4.	1	○	○ :	(‘13.7.1.)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02-2110-3164)
	2	○	○	(‘13.7.1.)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02-2110-3164)
	3	○ 15	○	(‘13.7.1.)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02-2110-3164)
국방부				
1.		○ 14 ※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 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 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 40보급창, 공군82정비창, 공군83정비창	○ , 3 , 3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보도자료>‘13년 1월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11.8.20.) (‘13.1.1.)
				(02-748-5380)
2.		< >	○ 3	(‘13.6.1.)
				(02-748-5121)
3.		< >	○ -	(‘13.2.)
				(02-748-5107)

			()
4.	○ - : 5 - : 6 - : 7 - : 3 (5 , 6)	○ - : 3 (-2) - : 7 (+1) - : 7 - : 4 (+1) (6 , 7)	('13.1.1) (02-748-5135)
5.	< >	○ 3 -	('13.1.) (02-748-5173)
	○ , ,	○ (, ,)	('13.1.) (02-748-5173)
6.	○ :	○ : ,	('13.1.1) (02-748-5245)
7.	○ 1~2 ,	○ ,	('13.1.1) (02-748-5245)

			()
8.	○	○ - 13 ~15 1 * 서울특별시 3개구(광진, 성동, 동대문) 예비군 대상 /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	- '13. (02-748-5241)
9.	○ 81,500 88,000 97,500 108,000	○ (15%) 93,700 (12,200) 101,200 (13,200) 112,100 (14,200) 124,200 (16,200)	('13.1.1.) (02-748-6613)
10.	○ - * 갑지역 : 15,000원 * 을지역 : 12,000원	- * 갑지역 : 16,500원 * 을지역 : 13,200원	('13.1.1.) (02-748-6613)
	○ () - : 29,700	- : 32,700	('13.1.1.) (02-748-6613)
	○ -	-	('13.1.1.) (02-748-6613)
11.	○	○	('12.9.22.) ('13.1.1.) (02-748-6655)

			()
12.	○ ,	○ 6 (, , , ,) 2 , ,)	(‘13.7.1.) (02-748-6648)
13. A	○ ,	○ 13 1 ○ 14 , 15	(‘13.4.1.) (02-748-6649)
14.	○	○ - :	(‘12.9.14.) (‘12.10.1.) (02-748-5757)

행정안전부

1.	1		10%			10%	(13.1.)
			20%			40%	
						20%	
						40%	
			1 0.03%				
			-	· ()		10%	
			80%				
			10%				
			10%				
		(I)					
		30%					
		(II)					
		10%					
		1 0.03%					
	2		10%	()		5%	(02-2100-3916)
			()		1 0.03%		

				()
2.	1	○ - : 75% - : 50%	○ - 75%	('13.1)
	2		○ 2 50%	
	3	○ 2012 - 140	○ 2015 - 140	(02-2100-3926)
	4	○ 2012 , - () 60㎡. - () 40㎡ 40~60㎡ 50% 60~85㎡ 25%	○ 2015 , - () 60㎡. - () 40㎡ 40~60㎡ 50% 60~85㎡ 25%	
문화체육관광부				
1.		〈 〉	○ ○ ○ ○ 	

			()	
2.		< >	○ , (27 2) - 1 2 , . (16 2) ○ 「 」 (2)	○ (27 2 / '13.2.18) ○ (16 2 16 3 '13.2.18) ○ (2 '13.2.18)
			(02-3704-9406)	
3.	, 1	< >	○ , , , ,	(13.2 ())
	2	< >	○ , - , , - , ,	(02-3704-9311)
	3	< >	○ , . . ,	
	4	○ 24%	○ 20%	

농림수산식품부			
			()
1.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 농어촌정비법	(‘13.1.) (044-201-1553)
2.	< >	○ . , 5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3.1) (044-201-1574)
3.	<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마당>보도자료> 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13.1.) (044-201-1590)

			()
4.	○ 98% 2 ○ <12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12 + 4 > (), , , , , , , ○ -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물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13.6) (044-201-2419)
5.	○	○ ☞ (참고) 농림수산물품부>알림미당>보도자료>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044-201-2457)
6.	○ :	○ : ☞ (참고) 농림수산물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13.1) (044-201-1535)

			()
7.	○ : 19 65 ○ : 30 60	○ 19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사>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운영 요령	(‘13.1.) (‘13.1.) (044-201-1588) (044-201-2639)
8.	○ : 60 ○ : 70	○ 64 ○ : 75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영농규모화사업,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3.1.) (044-201-1737)
9.	○ ○ , , 300㎡, . . 50㎡	○ , , (, , ,) ○ , , , 15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사>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3.2.) (044-201-2317)

			()
10.	< >	○ (3%, 2) ☞ (참고)농림수산물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농가 시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13.1.) (044-201-2342)
11.	○ .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자>알림소식>보도자 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13.1.1.) (044-201-2355)
12.	○ ,	○ ☞() > > >	('13.5.) (044-201-2355)
13.	○ . , . . ,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	('13.1.1.) (044-201-2656)
14.	○ 50km 49	○ 30km (49) ☞ (참고)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사업시 행지침사>공지사항>조건불리지역 수산물불 제 사업	. ('13.1.1.) (044-201-2643)

			()
15.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3.6.) (044-201-2622)
16.	○ .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어촌·어항법	(‘13.4.) (044-201-2632)
17.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1.) (044-201-2619)
18. 5 , .	○ 764km ² ○ B 133km ² ○ C 102km ²	○ 776km ² ○ B 176km ² ○ C 138km ²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	(‘13. 1.) (044-201-2657)

			()
19.	○ : 3% ○ : 20% ○ : 3%	○ :10% ○ :10%() ○ :20%()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12.12.) (044-201-1858)
20.	○ -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6.2) (044-201-1872)
21.	< >	○ ○ ()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3.4.) (044-201-1882)
22.	○ - 5	○ - 7 1 3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강화	('13.6.2.) (044-201-1654)

			()
23.	< >	○ ○ ○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1.) (044-201-1717)
24. FTA	< >	○ FTA * 성과분석(5월말), 투융자계획(9월말) ☞ (참고) 농림수산물부>정보광장>법령정보>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1) (044-201-1719)
지식경제부			
1.	1	○ , 11	('12.12.) (02-2110-5302)
	2	○	('13.3.) (02-2110-5302)
		2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
2.	1	○ · , LMO	○ ○ ·	(13.12.)
	2	○ ·	○ ○ ·	
	3	○	○	(02-2110-5661)
	4	○ (36) · , ,	○ · , , ○ ☞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3.		○ 20%	○ 25%	(‘12.11.27.)
			☞ (참고)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201호, 2012.11.27, 일부개정]	(02-2110-5495)
4.		○	○	(‘12.8.24.)
			☞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012.8.24], [법률 제11437호, 2012.5.23, 일부개정]	(02-509-7238)
5.		○	○	(‘12.11.6.)
				(02-2195-1115)
환경부				
1.		○ 17 ○ BOD, COD	○ 20 ○ BOD, TOC(Total Organic Carbon)	(‘13.1.)
				(02-2110-6822)
2. 「		< >	○	(‘13.9.)
」			☞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경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02-2110-6960)

				()
3.		○ ,	○ , ,	('13.2.)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02-2110-6859)
4		○ 2	○	('13.2.)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02-2110-6859)
5.		○	○ , 2 Tier-3	('13.2.)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02-2110-6809)
6.	1	○ /	○ /	('13. 2)
				(02-2110-6778)
	2	○ (PM10)	○ (PM10)	(('13.2.~) ,
			☞ (참고) 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	(02-2110-6778)
	3	○ , '06) (	○) (	(('13.2.~) ,
				(032-560-7344)

			()	
7.	○	○	('13.1.) (02-2110-6943)	
보건복지부				
1.	①	○ 50%	○ 5%	('13.1.) (02-2023-7426)
	()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②	○ 100%	○ 5%	('13.1.) (02-2023-7426)
	(TS-1)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③	○	○	('13.10.) (02-2023-8756)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④	○	○	('13.10.) (02-2023-7413)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
2.	1	Hib	○	○ - : - : 1 5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13.3) (043-719-7369)
	2	65	○	○ :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13.5) (043-719-7369)
	1		○ 107	○ 144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촉촉한 의료안전망 구축 [2] ('13) (02-2023-8257)
	2		○ 72 / (6)	○ 5 /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촉촉한 의료안전망 구축 ('13) (02-2023-8257)
4. PC			○ 1/2	○ PC ('13.6) (02-2023-7848)

				()																																							
5.	1100g	○ ○	○ ○ 100	(13.1.1)																																							
	2	○	○ 150	(02-2023-7785)																																							
6.	1	○ ' 12 - : 55.1 - : 88.1	○ ' 13 - : 58 - : 92.8	(13.1.1) (13.1.1)																																							
	22	○ -(18-64) 6 -(65) 15 ○ : 5 ○ -(18-64) 0 -(65) 2	○ -(18-64) 8 -(65) 17 ○ : 7 ○ -(18-64) 2 -(65) 4	(02-2023-8672) (02-2023-8654)																																							
7.	1	○ 1	○ 2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3.1)																																							
	2	【 (18) 】 <table><tr><th>활동지원 등급</th><th>인정 점수</th><th>기본 급여</th></tr><tr><td>1등급</td><td>380점~445점</td><td>860,000원</td></tr><tr><td>2등급</td><td>320점~379점</td><td>690,000원</td></tr><tr><td>3등급</td><td>260점~319점</td><td>520,000원</td></tr><tr><td>4등급</td><td>220점~259점</td><td>350,000원</td></tr></table> 【 (6 ~ 18) 】 <table><tr><th>활동지원 등급</th><th>인정 점수</th><th>기본 급여</th></tr><tr><td>1등급</td><td>320점~445점</td><td>520,000원</td></tr><tr><td>2등급</td><td>220점~319점</td><td>350,000원</td></tr></table>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319점	350,000원	【 (18) 】 <table><tr><th>활동지원 등급</th><th>인정 점수</th><th>기본 급여</th></tr><tr><td>1등급</td><td>380점~445점</td><td>886,000원</td></tr><tr><td>2등급</td><td>320점~379점</td><td>711,000원</td></tr><tr><td>3등급</td><td>260점~319점</td><td>536,000원</td></tr><tr><td>4등급</td><td>220점~259점</td><td>361,000원</td></tr></table>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86,000원	2등급	320점~379점	711,000원	3등급	260점~319점	536,000원	4등급	220점~259점	361,000원	(13.1) (02-2023-8204)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319점	350,000원																																									
활동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86,000원																																									
2등급	320점~379점	711,000원																																									
3등급	260점~319점	536,000원																																									
4등급	220점~259점	361,000원																																									

			()																																								
7.	○ , <table><tr><th>구 분</th><th>추가 급여</th><th>구 분</th><th>추가 급여</th></tr><tr><td>최중증 1인가구</td><td>664,000</td><td>출산 가구</td><td>664,000</td></tr><tr><td>중증 1인가구</td><td>166,000</td><td>학교 생활</td><td>83,000</td></tr><tr><td>중증 장애인 가구</td><td>83,000</td><td>직장 생활</td><td>83,000</td></tr><tr><td>취약 가구</td><td>83,000</td><td>자립 준비</td><td>166,000</td></tr></table>	구 분	추가 급여	구 분	추가 급여	최중증 1인가구	664,000	출산 가구	664,000	중증 1인가구	166,000	학교 생활	83,000	중증 장애인 가구	83,000	직장 생활	83,000	취약 가구	83,000	자립 준비	166,000	○ , <table><tr><th>분 류</th><th>추가급여</th></tr><tr><td>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td><td>684,000원</td></tr><tr><td>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td><td>171,000원</td></tr><tr><td>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td><td>684,000원</td></tr><tr><td>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td><td>171,000원</td></tr><tr><td>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td><td>684,000원</td></tr><tr><td>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td><td>171,000원</td></tr><tr><td>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td><td>86,000원</td></tr><tr><td>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td><td>86,000원</td></tr><tr><td>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td><td>171,000원</td></tr></table>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8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71,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84,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71,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000원	(02-2023-8664)
구 분	추가 급여	구 분	추가 급여																																								
최중증 1인가구	664,000	출산 가구	664,000																																								
중증 1인가구	166,000	학교 생활	83,000																																								
중증 장애인 가구	83,000	직장 생활	83,000																																								
취약 가구	83,000	자립 준비	166,000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8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71,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84,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71,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000원																																										
	○ <table><tr><th>분 류</th><th>금액 (원)</th></tr><tr><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td>8,300</td></tr><tr><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td>9,300</td></tr><tr><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td><td>9,300</td></tr></table>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 <table><tr><th>분 류</th><th>금액 (원)</th></tr><tr><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td>8,550</td></tr><tr><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td>10,260</td></tr><tr><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td><td>10,260</td></tr></table>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 - : 1 4,000 - : .	○ - : 1 6,000 - : .																																									

			()
8.	-	○ ※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13.1.27.) (02-2023-8184)
9.	○ 100% (31) - '12 : 48,111	○ 150% (40) - '13 : 57,811	- (02-2023-8667)
10.	-	○ - () , , , , , ○ - () 30 ○ - () ,	('13.4.11.) (02-2023-8640)
11.	○ 1 ~3 : 180 (300) ○ 4 : 100	○ 1 ~4 : 180 (300)	('13.1) (02-2023-8483)

			()
12. 3~5 全	○ 5	○ '13 3 3-5	('13.3)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 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02-2023-8926)
13.	○ 1,495,550 (4)	○ 3.4% 1,546,399 (4)	('13.1)
	○ 4.17%	○ 1.04%	
	○ 133 108.5 101.5	○ 228 136 116	
	○ 3 ※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 9.5% (5.3%)	(02-2023-8128)
	○ (,)	○	
	○ 30%	○ 30%	
	○ 1 50	○ 1 75	

			()	
국토해양부				
1.	1	○ .	○ - , , ○ ○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 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13.1.1.) (044-201-3424)
	2	○ .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 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13.) (044-201-3424)
	3	○ (100%)	○ · (30%) (70%)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 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제 도입	(13.1.1.) (044-201-3424)

			()
2.		○ () , () , , , , , ○ 2012 3 4 (, , ,)	. ('13.8)
			○ *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3.		○ (PPLIS) , ,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 정보시스템)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3.9)
			('12.12.21) (044-201-4651)
4.	①	○ . : 4.0% ○ : 4.2% ○ . : 5.2%	○ . : 3.7% ○ : 3.8% ○ . : 4.3%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12.12.21) (044-201-3338)
	②	○ 1 : 2.5% ○ 1 2 : 3.5% ○ 2 : 4.5%	○ 1 : 2.0% ○ 1 2 : 3.0% ○ 2 : 4.0%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 ('12.12.21) (044-201-3338)

			()
5.	○ . : 3 (3 5) ○ : 5 ○ . : 3 (4)	○ . : () 4 (4 5) ○ : () 5 5 ○ . : () 4 (5)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13.1.) (044-201-3338)
6.	○ . - 60m² + 5 + 10	○ . - 60m² + 7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13.1) (044-201-3338)
7.	○	○ · , , ·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13.1) (044-201-3338)
8.	○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13.1) (044-201-3338)

			()
9.	< >	○	('13.1)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044-201-3369)
10.	○ 500	○ 500	('13.1)
	○ 4	○ 2)	(044-201-3369)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아파트 관리, 입주인 자유 크게 확대	
11.	○	○	('13.7)
		☞() >	(044-201-3367)
12.	○	○	('13.7)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044-201-3367)
13.	○ 2006.9.25 (2009.7.1)	○ 2014.12.31	('12.12.18)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044-201-3392, 3386)

				()
14.	· PDF	○ (CAD)	○ PDF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 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 “나만의 맞춤지 도” 만든다.	(’13. 6) (031-210 -2720)
15.	① · ·	○ 30 ○ 10 30 ○	○ ○ 20 ○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13.1 , 4) (044-201-3581)
	② PQ (2 →4)	○ ○ (2)	○ , ○ (2~4) - 20 2 , 20 ~30 3 , 30 4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전부개정	(’13.4) (044-201-3501)

				()
16.	1	○	○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13.1)
	2	○	○ 70% - 20~50%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044-201-3581)
17.	1	○	○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13.1)
	2	○	○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044-201-3577)
	3	○	○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 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18.	< >	○	('13)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044-201-3689)
19.	○	○	('13.1.1)
	20	20 5	(044-201-369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 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20.	○	○ 12.5	('13.1.1)
	25	P	(044-201-369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 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21.	< >	○	('13.9.11)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44-201-3691)
22.	1	○ , ,	('13.1)
	2	○ . , ,	(044-201-3751)

			()
23.	○ $\frac{2}{3}$, $\frac{1}{2}$	○ : ① $\frac{2}{3}$, $\frac{1}{2}$, ② $\frac{4}{5}$	('13.7) (044-201-3751)
24.	○	○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자동차관리법	('12.12.18.) (044-201-3843)
25.	○	○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자동차관리법상	('13.9.) (044-201-3844)
26.	< >	○ 2013 3.5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 (044-201-3851)
27.	○ 4.5 ○ 3.5 ,	○ 4.5 → ○ 3.5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8) (044-201-3851)

			()
28.	< >	○ 2013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 (044-201-3851)
29.	○	○ - 5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자료>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13.1.1) (044-201-4602)
30.	○ 5 -	○ 20 (1) - ☞ () > > >	('13.6) (044-201-4177)
31.	1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항만법	('13.6)
	2	○ . - 2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항만법	20 (044-201-4145)
	3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항만법	

				()
32.	1	○ 1	○ 20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정책기본법	('12.12) (044-201-4003)
	2	○ 30	○ 6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정책기본법	
	3	· , , ,	○ 30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정책기본법	
	4	○ 6	○ 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정책기본법	
	5	○ 15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정책기본법	

			()
33.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6) (044-201-4007)
34.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 (044-201-4007)
35.	-	○ (1 3)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 (044-201-4007)
36.	-	○ ○ 2012 ('13.1)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1) (044-201-4011)

			()
37.	, < >	○ ,	(13.1)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044-201-4018)
38.	○ 20 , 10 · , 65 (39)	○ · , ·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4 (13.1.1.) (044-201-4022)
39.	· A급 B급 C급 D급 (또는 육상헬기장) 90M 미만 40M 미만 항공기 기 이상 40M 이상 15M 이의 1.2배 체 길이 로써 최 소 15M 이상 30M 이상 20M 이상 15M 이상 항공기 기 체폭의 1.2 배	○ 1.2 15m ☞ () > >	(13.1) (044-201-4349)

				()
40.		○ . (Shoulder)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항공법 시행규칙	(’13.1) (044-201-4349)
41.	①	○	○ 15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자연재해대책법	(’13.1) (044-201-4350)
	②	○	○ 15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자연재해대책법	
42.		○	○ 「 」, 「 」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항공법 시행규칙	(’13.2) (044-201-4355)
43.		-	○ (3 100%, 2 50%) ○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여수박람회 시후활용 특별법	(’13.3) (044-201-4377)

			()
44.	○ ('10) - : 3.8mg/L - : 0.074mg/L ○ ('10) - : 7,761.7kg/ - : 203.11kg/	○ : (3.3mg/L), (0.065mg/L) ○ ('17) - : 7,241.3kg/ - (193.00kg/)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회 호 총량관리 시행	'13.7) (044-201-4422)
45.	(6) < > 1 < > 1 1 < > 1 「 5 - - (好氣性)· (嫌氣性) (「 4 2 10)	< > < > < >	[6] ('13.1) (044-201-4427)

여성가족부			
			()
1.	< >	○ . , , , , . “ ” (’ 12.12.17) ☞ (참고)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	(’12.8) (’12.12.17.) (02-2075-8613, 8617)
2.	. < >	○ . ○ 100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13.1.1.) (02-2075-8614)
3.	○ 5	○ 7	(’13.1.1) (02-2075-8713)
4.	○ , ,	○ , , ,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6.19) (02-2075-8766)
5.	○ 19	○ , , : (’12.10.25.)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해당>보도자료> ‘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지원 확대’	(/ ’13.6.19)
	○	○ , , : ’ 13.6	(02-2075-8768)
	○ < >	○ : ’ 13. 6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참고)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
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
1.	○ 2 (,)	○ 17 (① . , ② , ③ , ④LED , ⑤ , ⑥ , ⑦ , ⑧IT , ⑨ , ⑩ . , ⑪ () . , ⑫ , ⑬ . ⑭ ⑮ ⑯MICE (U)	('13.1) (02-6902-8474)
2.	○ 6 2 ○	○ 3 4 ○	('13.1) (02-6902-8474)
3. ()	○ 1 90%, 2 80%, 3 70%	○ 1 90%, 2 70%, 3 50%	() ('13. 1) (02-2110-7172)
4.	○ 4	○ 5 (,) ☞ (참고) www.work.go.kr/intern/	2013 ('13.1) (02-2110-7178)

			()
5.	○ 15%	○ 100 15% ○ 100 300 10% + 5 ○ 300 5% + 2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용 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 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배전다	, ('12.12) (02-2110-7306)
6.	○ '12 : 590,000	○ '13 : 626,000 ☞ (참고)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 ('13.1) (02-2110-7313)
7.	○ 1/2	○ 3/4 ○ 1/2 3/4 + 1/4 ☞ (참고)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 ('13.1) (02-2110-7313)
	○ 1/2 + 1/2	○ 1/2 + 1/2	(02-2110-7313)
8.	○ (200)	○ (10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 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 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 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13.1) (02-2110-7313)

			()
9.	-	○ 1~2	('13.1) (02-2110-7307)
10.	-	○ ()	('13.1) (02-2110-7310)
11.	-	○ ‘ , , (), ,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 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 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 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 (02-2110-7307)
12.	○ 50% ○ 50%	○ 15 30 ○ 30%	('13.1) (02-2110-7305)
13.	○ 4,580	○ 4,86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 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 간급 4,860원으로 결정	('13.1.1) (02-2110-7399)
14. 4	○ 50 100	○ 100 10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 렛브로셔	('13.1.1) (02-2110-7420)

[illegible]

			()
19.	○ 2013	○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호)	('13.1) (02-6922-0953)
20.	○ 18 ○ 60	○ 19 ○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12.12.18) (02-2110-7219)
21.	○	○ 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12.11.18) (02-2110-7223)
방송통신위원회			
1.	TV	○ TV TV ※ 아날로그방송종료 : '12.12.31. ☞ (참고)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13.1.1) (02-750-2337)

			()
5.	o	o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13.2) (02-750-2753)
국가보훈처			
1.		- o : 2012 4% - o : 2012 5~15% - o . : 2012 2	(13.1.1.) (02-2020-5179)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보훈급여금>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금융위원회			
1.	①	o () o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중합개선평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3.1) (02-2156-9831)
	②	o 10% o 10% 20% (참고) 상 동	
	③	o 3 o (참고) 상 동	
	④	o (:100) * *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 o () 15 (참고) 상 동	

				()
2.	1	○ 18	○ (1~6) ☞ (참고)금융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12.10.15) (02-2156-9856)
	2	○	○ (-) ☞ (참고)상등	
3. 「 」		○	○ 5%	('13.6.12) (02-2156-9475)
		○ (CP)	○ (CP) * * 실물발행 위험, 유통의 불편함, 투자자 보호 미흡 ※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는 병행 유지 ☞ (참고)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단기시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1.15) (02-2156-9874)
관세청				
				()
1.		○ 3	○ 3	('13) (042-481-7906)

병무청			
			()
1.	○ (43 13)	○ (384) - : 2012.12.21. - - ,	('12.12.21.) (042-481-2918)
2.	○	○ 19	('12.12.20) (042-481-2946)
3.	○ .	○ . ☞ (참고)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 공고>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	('13) (042-481-2738) (032-835-2736)
4.	○ (,)	○ ,	('13.1.1.) (042-481-2716)
5.	○ 200 :	○ 100	('12.12.20.) (042-481-2771)

			()
6.	○ - 2 10	○ - 15	('12.12.20.) (042-481-2771)
7. ‘ ’	○ ‘ ’ 28 1	○ ‘ ’ 29 1	('12.12.20) (042-481-2965)
	○ 29 6	○ 30 6	
8.	< >	○ 25 1 , 3	('12.12.20) (042-481-2965)
9. 「 」	○ : 3	○ : 2 ☞ (참고)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3.2) (042-481-2992~3)
10.	○ 3	○ 6 · 25 ☞ (참고)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3) (042-481-2992~3)

			()
11.	○ - 2 , 1 ※ 동점자, 공동수상자, 입 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 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	○ - 2 - 1	('13.1 ,) (042-481-3005)
12.	< >	○	(('13.1.1.) (042-481-3007)
방위사업청			
1.	○	○「 」,「 」	('13. 2)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 령>행정규칙 (02-2079-6445)
2.	< >	○「 」 (1%p)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 령>행정규칙	('13. 1월) (02-2079-6445)

			()
3.	< >	○ 20% 5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13.2) (02-2079-6445)
4.	○ 2 ○	○ (50%) ○ 「 」 5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13. 2) (02-2079-6445)
5.	○ ○ (: 100%)	○ (0.5%p) ○ (10%)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13.1월) (02-2079-6445)
6.	○ 「 2 」 50%	○ 「 2 10 2 3 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 감면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13.2) (02-2079-6454)

				()
7. 「 」	① . ○	○ (.)	-	('13.3.19)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	(02-2079-6707)
	② ○	○ ('09.7.31)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	
	③ ○	○ 4 5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	
	④ ○	○	※ 수수료율 : 판매가의 1/10,000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	

			()
8.		< > < > ○ < > ○ ☞ (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12) (02-2079-4123)
경찰청			
1.	1	○ 17 - 28 ※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	○ 45 ☞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
	2	○	○ 60 , ○ 10 , , ○ 10 , ,
	3	○ ※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치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	○

소방방재청				
				()
1.	1	-	○ - : 2013. 2.23 - : 2013. 2.23 ~ 8.22 ※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 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 2.23부터	(13.2)
	2	-	○ () - 1 1 ※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 2 - 1 - 1	(02-2100-5338)
2.	1	○ : 21 30 ○ : 21 30 ○ : 20 30 ○ : 20 35	○ : 21 40 ○ : 21 40 ○ : 20 40 ○ : 20 40	(13.1.1) (02-2100-5316)
	2	○ (5) : , , , ,	○ (3) : , , ○ (2) : , , , , , ,	
	과목 변경			

산림청			
			()
1.		< >	○ ('13.5.24) (042-481-4204, 8875)
2.	2	< >	○ - , , ('13.) (042-481-4216)
	3	< >	○ - (170), (210), (130) ('12.7.26) (042-481-4216)
3.		○ 3km	○ 2km ☞ (참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2.12) (042-481-4076)

				()
4.		○	○	
			,	(13.1.1)
		○	○	(042-481-4201)
			,	
중소기업청				
1.	1	○ ()	○ ()	(13.1)
		○	○	
		○		
		○		
	2	○ .	○ .	
	3	< >	○ R&D	(042-481-4453)
	4	○ 1	○ (1 ~9)	
2.		< >	○ : , ,	2013
			○ : , , ,	(13. 1)
			○ : 10 ()	
			○ : (: 1) (80%, 20%)	(042-481-4491)
			○ : → .	
			→ → → →	
			→	

특허청			
			()
1.	○	○ 3 30%	(13.1.1.) (042-481-5195)
2.	○ (ATM) ○ (ATM) :	○ ○ (ATM)	- (042-481-5195)
3.	○	○ ○	(13.1) (042-481-8238)
식품의약품안전청			
1.	○ - : (), (), ()	○ - :	(13.1) (043-719-2257)